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132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를 최대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됨(「주택법」 개정, 3.19. 공포·시행)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하며, 거주 의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가능한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목)에 미포함되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의2호)

취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차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매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 jsr56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